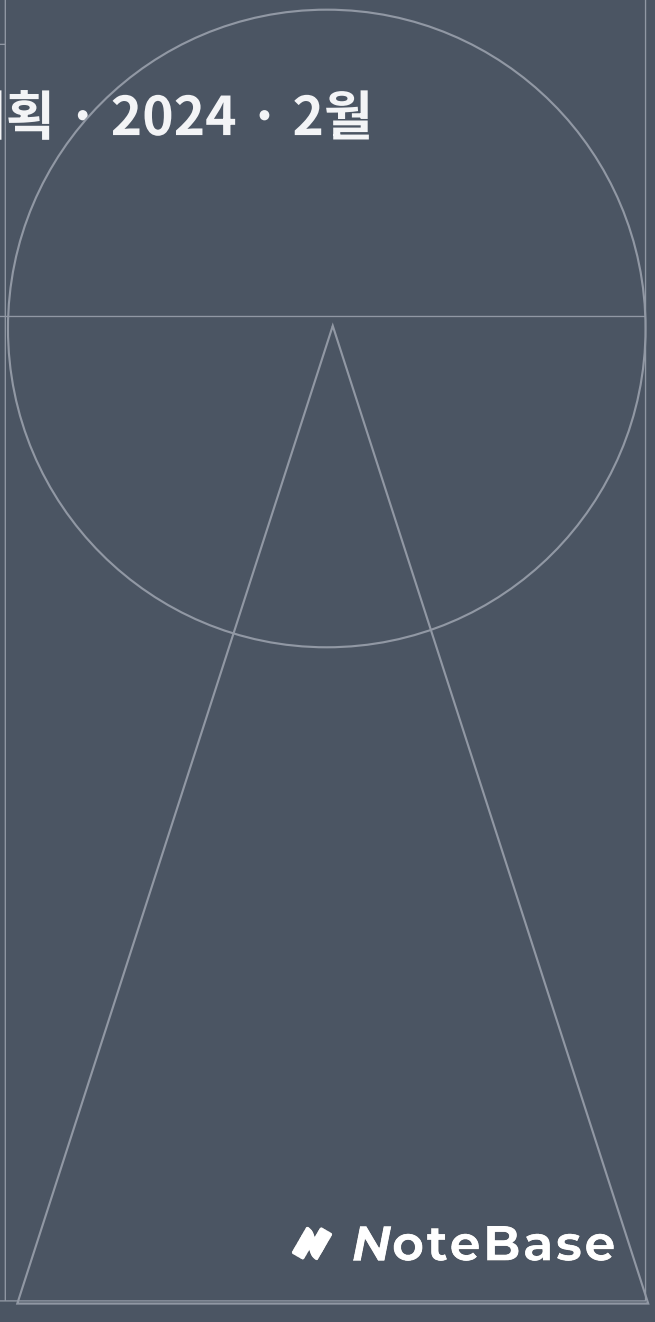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서울시/9급 · 건축계획 · 2024 · 2월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서울시/9급 · 건축계획 · 2024 · 2월

공무원/서울시/9급 · 건축계획 · 2024 · 2월

문 1. 사무소의 엘리베이터 조닝 시스템 중 더블 데크 방식(double deck system)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사무소를 일련의 존(zone)으로 구분하고 여러 층으로 구성된 한 개의 존을 한 개의 뱅크(bank)의 엘리베이터가 서비스하는 방식이다.

② 동일한 샤프트 내에 2대의 엘리베이터를 배치하므로 엘리베이터 설치대수 절약이 가능하여 시설비가 경제적이다.

③ 출발층에서 목적으로 하는 층까지 갈아타는 방식으로 셔틀 시스템(shuttle system)이라고도 한다.

④ 구조상의 제약조건이 비교적 없어 소규모의 사무소에 적합한 방식이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더블 데크 방식은 **상하 2단으로 결합된 승객실을 하나의 승강로에서 함께 운행**하여 수송능력을 높인다. 같은 수송능력을 단층식으로 확보할 때보다 필요한 승강로와 설치 공간을 줄일 수 있어 경제적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여러 층을 하나의 존으로 묶고 그 존을 담당하는 엘리베이터 군인 뱅크를 배정하는 것은 **일반적인 존별 서비스 방식**의 설명이다. 더블 데크의 구별 기준은 담당 층의 구분이 아니라, 두 승객실을 상하로 결합하여 한 승강로에서 함께 운행한다는 점이다.

② O: 더블 데크는 **위아래 두 승객실이 하나의 운행 유닛으로 움직이는 구조**이다. 하나의 승강로에서 두 층의 승객을 동시에 수송하므로, 같은 수송능력을 단층식으로 확보할 때보다 필요한 운행 유닛과 승강로 수를 줄일 수 있다. 이러한 설비·공간의 절약이 시설비 측면의 경제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

③ X: 급행 엘리베이터로 중간 환승층까지 이동한 뒤 해당 구역의 엘리베이터로 갈아타는 것은 **스카이 로비 방식**의 설명이다. 이때 출발 로비와 스카이 로비를 연결하는 급행 운행이 셔틀 서비스이다. 더블 데크는 환승 여부가 아니라 두 승객실의 상하 결합 구조를 뜻한다.

④ X: 일반적인 고정식 더블 데크는 상하 승객실이 인접한 두 층에 동시에 정차하므로 **층고와 승강장 계획에 제약**을 받는다. 따라서 구조적 제약이 적어 소규모 사무소에 적합하다는 설명은 맞지 않는다. 대규모 고층 사무소처럼 수송 수요가 크고 승강로 공간의 효율이 중요한 건물에 적합하다.

NoteBase

문 2. 종합병원에서 클로즈드 시스템(closed system) 형식의 외래진료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외래진료부는 외래진료, 간단한 처치, 소검사 등을 위주로 하며, 전문 또는 특수설비가 요구되는 진료시설, 검사시설 등은 중앙진료부에 설치하여 중앙화한다.

② 외래진료부는 환자의 이용에 편리하도록 진료 분야별로 최대한 분산시키는 것이 좋다.

③ 외래진료부의 외래환자는 보통 병상 수의 4~5배의 환자를 1일 환자 수로 예상한다.

④ 병원 이용자 중 외래환자가 가장 많기 때문에 병원 전체에 대한 외래진료부의 면적 비율은 20% 이상을 확보한다.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외래진료부는 통원환자의 진찰·간단한 처치·소검사를 담당하고, 전문 장비나 특수설비가 필요한 진료·검사는 **중앙진료부에 모아 공동으로 이용**하도록 한다. 이렇게 기능을 나누면 고가 장비와 전문 인력의 중복 배치를 줄일 수 있다.

선지별 해설

① O: 외래진료부에서는 통원환자의 진찰, 간단한 처치와 소검사를 수행한다. 전문 장비나 특수설비가 필요한 진료·검사 기능은 **중앙진료부에 집중**하여 외래환자와 입원환자가 함께 이용하도록 한다. 이는 시설·장비의 중복 설치를 줄이고 전문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능 분담이다.

② X: 환자의 이용 편의를 위해서는 진료과를 최대한 흩어 놓기보다 **관련 진료과와 공용 기능을 연계하여 집약 배치**하는 것이 좋다. 지나친 분산은 접수·진찰·검사·처치 사이의 이동을 늘리고 길찾기를 어렵게 한다. 각 진료과의 특성에 따라 구획하되, 환자의 이동거리를 줄이는 배치가 원칙이다.

③ X: 전통적인 병원 건축계획에서 1일 외래환자 수의 개략적인 산정값은 병상 수의 **2~3배 정도**이다. 선지의 '4~5배'를 이 값으로 고친다. 다만 이는 규모를 추정하기 위한 개략값이며, 실제 계획에서는 병원의 성격과 지역 여건, 진료과별 이용 수요 등을 고려하여 환자 수를 추정한다.

④ X: 전통적인 종합병원 계획에서 외래진료부의 면적은 병원 전체 연면적의 **10~15% 정도**를 개략적인 기준으로 삼는다. 외래환자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20% 이상'을 확보한다고 할 수 없다. 외래환자는 일정 시간 진료를 받고 귀가하므로, 환자 수뿐 아니라 체류시간과 필요한 진료·대기 공간을 함께 고려하여 면적을 계획한다.

NoteBase

문 4. 건축디자인의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균형은 기하학과 관련성이 높아 아름다운 균형을 이루는 황금분할, 인체의 균형과 관련된 비투르비우스적 인간 등과 관련이 깊다.

② 리듬은 반복성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며, 대표적인 예는 미니멀리즘으로 이는 단순성과 함께 형태의 반복성을 나타낸다.

③ 통일성은 구성체의 요소들 간에 이질감이 느껴지지 않게 전체로서 하나의 이미지를 주는 것이다.

④ 대비는 다양한 대립되는 요소에 의해 생겨나며, 대표적인 예로 건축양식 간 비교, 재료 간 비교, 면의 비교 등이 있다.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①의 황금분할과 비투르비우스적 인간은 부분과 전체의 크기 관계를 다루는 **비례**의 예이다. 균형은 크기·색채·형태 등의 **시각적 무게가 안정되게 배분된 상태**를 뜻한다.

선지별 해설

① X: 황금분할과 비투르비우스적 인간은 **비례의 원리**를 설명하는 예이다. 비례는 부분과 부분 또는 부분과 전체 사이의 크기 관계로, 황금분할은 일정한 길이의 비를, 비투르비우스적 인간은 인체 각 부분의 비를 다룬다. 균형은 구성 요소의 시각적 무게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안정감을 이루는 상태이므로, 선지는 비례와 균형을 혼동했다.

② O: 리듬은 형태·선·색채 등의 요소가 반복되면서 생기는 시각적 흐름과 운동감이다. 미니멀리즘은 형태를 단순화하고 기본적인 기하학적 요소를 반복적으로 배열하는 특성을 보인다. 이처럼 **단순한 형태의 반복**은 시선의 흐름을 만들어 리듬을 형성할 수 있다.

③ O: 통일성은 여러 구성 요소가 서로 연관되어 전체가 하나로 느껴지는 성질이다. 공통된 형태·색채·재료 등을 사용하면 요소 사이의 연결감이 생긴다. 모든 요소가 똑같아야 한다는 뜻은 아니며, 서로 다른 요소도 조화롭게 연결되면 **전체로서 하나의 이미지**를 이룰 수 있다.

④ O: 대비는 서로 대립하거나 차이가 뚜렷한 요소를 함께 놓아 각각의 특성이 두드러지게 하는 원리이다. 건축양식의 형태 차이, 재료의 거칠고 매끄러운 질감, 면의 밝고 어두운 정도 등을 비교할 때 나타날 수 있다. 단순히 대상을 비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서로 다른 특성이 대조되어 강조되는 것**이 핵심이다.

NoteBase

문 5. 한국전통건축의 초석(礎石)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초석은 주초(柱礎)라고도 하며, 기둥 밑에 놓여 기둥에 전달되는 지면의 습기를 차단해주고 건물 하중을 지면에 효율적으로 전달해주는 역할을 한다.

② 지면에 받침돌을 놓고 그 위에 돌을 올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받침돌을 초석(礎石)이라 하고 위의 것을 초반(礎盤)이라 한다.

③ 자연석초석은 자연석을 가공 없이 기둥 밑면을 초석에 맞도록 그랭이질하여 기둥을 초석에 맞추는 것으로 덤벙주초라고도 하며, 강돌은 쓰지 않고 산돌을 쓴다.

④ 장주초석은 일반초석에 비해 월등히 키가 큰 초석으로 주로 중층 누각건물에서 기둥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 많이 사용된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②는 두 돌의 명칭을 서로 바꾸었다. 지면에 놓는 아래 받침돌이 **초반(礎盤)**이고, 그 위에서 기둥을 받치는 돌이 **초석(礎石)**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초석은 주초라고도 하는 기둥 밑의 받침돌이다. 목재 기둥을 땅에서 띄워 **지면의 습기로 인한 부식을 줄이고**, 기둥을 통해 내려오는 건물의 하중을 지면으로 전달한다.

② X: 아래 받침돌과 위쪽 돌의 이름이 뒤바뀌었다. 두 돌을 구분하여 놓을 때는 **아래 받침돌을 초반, 그 위의 돌을 초석**이라 한다. 즉, 아래에서부터 초반 → 초석 → 기둥의 관계로 이해한다.

③ O: 자연석초석은 돌을 다듬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는 초석으로, 덤벙주초라고도 한다. 돌의 윗면이 고르지 않으므로 **기둥 밑면을 돌의 굴곡에 맞추어 깎는 그랭이질**을 하여 밀착시킨다. 전통적인 시공에서는 미끄러운 강돌 대신 산돌을 사용한다.

④ O: 장주초석은 일반초석보다 높이가 훨씬 큰 초석으로, 중층 누각건물 등에 사용한다. 높은 석재 받침으로 **목재 기둥의 하단을 지면에서 높여** 습기와 빗물에 노출되는 것을 줄이고 기둥의 부식을 방지한다.

NoteBase

문 6. <보기>에서 설명하는 건축양식에 해당하는 것은?

<보기>
· 루이 15세 시대의 프랑스에서 유행한 장식양식이 건축에 도입되어 나타난 양식이다.
· 개인의 생활을 위주로 한 소규모 공간에 주로 전개되었으며, 실내를 곡선과 곡면을 이용하여 우아하고 화려하게 장식하였다.
· 대표적인 건축물로는 님펜부르크 궁전, 쉔브론 궁전 등이 있다.

① 르네상스(Renaissance) 건축
② 바로크(Baroque) 건축
③ 로코코(Rococo) 건축
④ 아르누보(Art Nouveau) 건축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루이 15세 시대에 유행하고, 개인의 생활공간을 곡선과 곡면으로 우아하게 꾸민 것은 **로코코**의 특징이다. 화려함 자체보다 **소규모 실내의 섬세한 장식**이 결정적인 단서이다.

핵심 풀이

로코코는 18세기 프랑스에서 발달한 장식양식으로, 루이 15세 시대의 실내 장식과 밀접하다. 보기의 '개인의 생활을 위주로 한 소규모 공간'은 사적인 생활과 사교를 위한 실내에 장식이 집중되었다는 뜻이다. 곡선과 곡면을 활용하고, 조개껍데기나 식물에서 따온 무늬와 비대칭적인 장식으로 우아하고 경쾌한 분위기를 만든다. 따라서 **루이 15세 시대와 사적 실내의 섬세한 곡선 장식**을 함께 제시한 설명은 로코코 건축을 가리킨다.

바로크와 로코코는 모두 곡선과 화려한 장식을 사용하므로, 곡선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구분하기는 어렵다. 바로크가 왕권이나 종교적 권위를 드러내는 웅장하고 극적인 공간을 강조한다면, 보기에서 강조한 것은 **개인의 생활공간을 우아하고 섬세하게 꾸미는 성격**이다. 이 점이 바로크보다 로코코에 해당하는 이유이다.

보기의 님펜부르크 궁전과 쉔브론 궁전은 **로코코 실내 장식의 사례**로 이해해야 한다. 님펜부르크 궁전의 대홀에는 화려한 로코코 장식이 있고, 쉔브론 궁전에도 로코코 양식으로 꾸민 실내가 있다. 궁전에는 여러 시기의 양식이 함께 나타날 수 있으므로, 건물 전체가 오직 로코코 양식으로만 이루어졌다는 뜻은 아니다.

NoteBase

문 7. '미스 반 데어 로에(Mies van der Rohe)'가 설계한 건축물이 아닌 것은?

① 구겐하임 미술관

② 판스워스 하우스

③ 투겐하트 주택

④ 시그램 빌딩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구겐하임 미술관은 미스 반 데어 로에가 아니라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가 설계했다. 중앙의 큰 공간을 둘러싸며 이어지는 **나선형 경사로**가 특징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뉴욕의 구겐하임 미술관은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의 작품이다. 중앙의 큰 공간을 둘러싼 나선형 경사로를 따라 전시를 관람하도록 계획했으므로, 미스 반 데어 로에의 작품으로 연결하면 잘못이다.

② O: 판스워스 하우스는 미스 반 데어 로에가 설계한 주택이다. 흰색 철골과 넓은 유리벽으로 구성된 단순한 직육면체 형태로, 구조의 간결함과 실내외의 시각적 연결을 보여 준다.

③ O: 투겐하트 주택은 미스 반 데어 로에가 체코 브르노에 설계한 주택이다. 거실 공간을 작은 방들로 잘게 나누기보다 **연속적인 공간**으로 구성하고, 큰 유리창을 통해 테라스와 정원으로 연결했다.

④ O: 시그램 빌딩은 미스 반 데어 로에가 **필립 존슨과 함께 설계**한 뉴욕의 고층 업무용 건축물이다. 공동 설계라는 점은 미스 반 데어 로에의 작품이라는 판단과 모순되지 않는다.

NoteBase

문 8. 난방설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열전달이란 유체(공기)와 벽체와의 전도 및 대류가 조합된 상태이다.

②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상 오피스텔에서 개별난방설비를 할 경우, 지름 20cm 이상의 공기흡입구 및 배기구를 반쯤 열려있는 상태로 바깥공기에 접하도록 설치한다.

③ 보일러실의 천장 높이는 보일러 상부에서 0.8m 이상 두도록 한다.

④ 방열기는 외벽에 면한 열손실이 가장 큰 곳인 창문 아래에 설치하고, 벽과 50~60mm 정도 띄워 설치한다.

정답 4번

①

건축 열환경에서 벽체 표면의 열전달은 **대류와 복사가 조합된 현상**으로 다룬다. 벽체 내부에서 온도차에 따라 열이 이동하는 현상은 전도이다.

②

개별난방설비의 일반 기준상 공기흡입구와 배기구는 각각 **지름 10cm 이상으로 항상 열려 있는 상태**로 바깥공기에 접하도록 설치한다. 전기보일러에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개별난방설비 등)
①영 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의 난방설비를 개별난방방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1996.2.9, 1999.5.11, 2001.1.17, 2017.12.4>
2. 보일러실의 윗부분에는 그 면적이 0.5제곱미터 이상인 환기창을 설치하고, 보일러실의 윗부분과 아랫부분에는 각각 지름 10센티미터 이상의 공기흡입구 및 배기구를 항상 열려있는 상태로 바깥공기에 접하도록 설치할 것. 다만, 전기보일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NoteBase

③

옥내 보일러의 동체 최상부에서 천장 등 상부 구조물까지의 거리는 **원칙적으로 1.2m 이상** 확보한다. 다만, 소형보일러와 주철제보일러는 **0.6m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열사용기자재의 검사 및 검사면제에 관한 기준 제3편 제22장 22.1.1(2)
제3편 보일러 설치검사기준등
제22장 설치⊠시공기준
22.1 설치장소
22.1.1 옥내설치
보일러를 옥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2) 보일러 동체 최상부로부터(보일러의 검사 및 취급에 지장이 없도록 작업대를 설치한 경우에는 작업대로부터) 천정, 배관등 보일러 상부에 있는 구조물까지의 거리는 1.2 m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소형보일러 및 주철제보일러의 경우에는 0.6 m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④

방열기는 **열손실이 큰 외벽의 창문 아래**에 설치하여 창면에서 내려오는 찬 기류를 완화한다. 벽과는 **약 50~60mm 간격**을 두어 방열기 뒤쪽에서도 공기가 원활하게 대류하도록 한다.

NoteBase

문 9. 중앙공급식 공기조화시스템 중 전공기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조 공간이나 존에 공조공기를 공급함으로써 냉·난방과 감습·가습이 동시에 이루어진다.

② 덕트공간으로 층고가 높아지는 단점이 있다.

③ 냉방을 하지 않고도 외기를 받아들여 실내를 통풍·냉각시킬 수 있다.

④ 대표적인 전공기방식은 벽의 개구부를 통해 외기를 유입하여 그 공기를 공조하는 팬코일 유닛방식이 있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④의 팬코일 유닛방식은 실내 코일에 **냉·온수를 공급**하여 공기를 냉각·가열하는 방식이다. 외기를 도입할 수 있어도 전공기방식은 아니며, 전공기방식은 중앙에서 처리한 **공기를 덕트로 공급**하여 실내 부하를 처리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전공기방식은 중앙 공조기에서 온도와 습도를 조절한 공기를 실내나 존에 공급하여 **온도 부하와 습도 부하를 함께 처리**한다. 예를 들어 여름에는 공기를 냉각하면서 수분을 제거하고, 겨울에는 가열하면서 필요한 수분을 보충할 수 있다. 선지의 '동시에'는 냉방·난방·감습·가습을 모두 한꺼번에 한다는 뜻이 아니라, 필요한 온도 조절과 습도 조절을 함께 수행한다는 뜻이다.

② O: 실내 부하를 처리하는 공기를 운반하려면 비교적 큰 덕트가 필요하다. 천장 내부에 덕트와 설치 여유 공간을 확보해야 하므로, **동일한 실내 천장높이를 유지하려면 층고가 커질 수 있다**.

③ O: 외기의 온도와 습도가 냉각에 적합한 경우에는 외기 도입량을 늘려 실내의 열을 밖으로 배출할 수 있다. 이를 **외기냉방**이라 하며, 외기만으로 냉방 부하를 처리할 수 있으면 냉동기를 가동하지 않고도 통풍·냉각이 가능하다. 이때도 공기를 보내는 송풍기는 운전한다.

④ X: 팬코일 유닛은 팬으로 공기를 순환시키고, 실내에 설치된 코일에 공급되는 냉·온수와 열교환하여 냉난방한다. 벽의 개구부를 통해 외기를 받아들이더라도 **실내 단말에 냉·온수를 공급하는 구조**이므로 전공기방식으로 분류하지 않는다. 전공기방식의 대표적인 예는 중앙 공조기에서 처리한 공기를 덕트로 보내는 단일덕트방식이다.

NoteBase

문 10. 호텔의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커머셜 호텔은 호텔의 수익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요식부 및 서비스 면적을 줄이고 숙박 부분 면적을 증가시킨다.

② 아파트먼트 호텔은 객실마다 주방 및 셀프서비스 시설이 부속되어 있으므로 호텔 자체의 공용식당은 필요하지 않다.

③ 레지던셜 호텔은 커머셜 호텔보다 규모가 크고 시설이 고급이며, 도심지에 주로 위치한다.

④ 일반적으로 숙박부 면적 비율이 가장 큰 호텔은 장기체재에 적합한 아파트먼트 호텔이다.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커머셜 호텔은 비즈니스 여행자를 대상으로 **숙박료 수입에 비중**을 두는 호텔이다. 따라서 요식부·서비스 공간의 비중을 줄이고 **숙박 부분의 비중을 높여** 객실 수입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계획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커머셜 호텔은 업무상 방문하는 여행자를 주된 대상으로 하며, 경영에서 숙박료 수입의 비중이 크다. 따라서 요식부·서비스 면적을 상대적으로 줄이고 **수입을 얻는 숙박 부분의 면적을 늘리는** 계획이 적합하다. 이는 식당이나 서비스 시설을 없앤다는 뜻이 아니라, 전체 면적에서 숙박 부분의 비중을 높인다는 뜻이다.

② X: 아파트먼트 호텔이 장기체재에 적합하며 객실마다 주방과 셀프서비스 시설을 갖춘다는 부분은 맞다. 그러나 **객실에서 취사할 수 있다는 사실이 공용식당의 불필요를 뜻하지는 않는다**. 직접 조리하지 않고 조식 등 식사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투숙객의 수요도 있기 때문이다. 공용식당은 이러한 식사 수요에 대응하는 시설이므로, 객실 취사시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호텔 자체의 공용식당은 필요하지 않다'고 단정한 부분을 고쳐야 한다.

③ X: 레지던셜 호텔은 고급 설비를 갖추지만, 일반적으로 커머셜 호텔보다 **규모가 작고 도심을 약간 벗어난 조용한 곳**에 위치한다. 따라서 '규모가 크고 도심지에 주로 위치한다'는 설명을 고쳐야 한다. 번화한 도심의 교통 중심지에 입지하여 비즈니스 여행자의 편의를 중시하는 것은 커머셜 호텔의 특징이다.

④ X: 일반적인 호텔 유형별 면적 구성에서 연면적에 대한 **숙박부 면적 비율이 가장 큰 것은 커머셜 호텔**이다. 아파트먼트 호텔이 장기체재에 적합하다는 부분은 맞지만, 이를 숙박부 면적 비율이 가장 크다는 뜻으로 연결할 수는 없다. 객실 1실당 면적의 크기와 호텔 전체 연면적 중 숙박부가 차지하는 비율은 서로 다른 비교 기준이다.

NoteBase

문 11. 단독주택 내부의 공간별 세부계획에서 각 실의 규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거실은 연면적의 약 30% 정도가 적당하다.

② 부엌은 일반적으로 연면적의 8~12%가 적당하다.

③ 연면적에 대한 복도의 면적 비율은 약 5% 정도가 적당하다.

④ 식사실은 일반적으로 4인 가족의 경우 7.5m^2로 계획한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복도 면적의 일반적인 계획 기준은 연면적의 **약 10%**이므로, '약 5%'라는 설명을 바로잡아야 한다.

선지별 해설

각 실의 규모는 가족 수와 생활방식, 가구 배치에 따라 조정하며, 다음 수치는 일반적인 계획상 기준이다.

① O: 거실은 가족의 휴식·단란·접객이 이루어지는 공동생활 공간이다. 가구 배치와 가족의 활동 공간을 고려하여 연면적의 **약 30%**를 계획상 기준으로 삼는다.

② O: 부엌은 조리기기와 작업대·수납공간을 배치하고 조리 중 이동할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일반적인 규모는 연면적의 **8~12%** 정도를 기준으로 계획한다.

③ X: 각 실을 연결하는 복도의 면적은 일반적으로 연면적의 **약 10%**를 기준으로 한다. 선지의 '약 5%'는 '약 10%'로 고쳐야 한다. 복도는 통행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되, 지나치게 길어져 생활공간을 줄이지 않도록 계획한다.

④ O: 4인 가족의 식사실은 일반적으로 **약 7.5 m^2**를 기준으로 계획한다. 식탁 자체의 면적뿐 아니라 의자를 빼고 앉는 공간과 식탁 주위를 이동하는 공간도 포함하여 규모를 정한다.

NoteBase

문 12. 극장·영화관의 건축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연기자의 자세한 표정이나 동작을 볼 수 있는 시선거리의 생리적 한도는 12m, 제1차 허용한도는 25m, 제2차 허용한도는 32m로 두고 계획한다.

② 객석의 단면형에 있어서 직접음과 1차 반사음 사이의 경로차는 17m 이내로 하는 것이 좋다.

③ 객석 계획에서 의자 전후 간격이 90cm 미만일 시 세로통로의 중앙부는 10석 이내가 되는 것이 좋다.

④ 무대 폭은 프로세니움 아치 폭의 1.5배 이상으로 계획한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직접음과 1차 반사음의 **경로차를 17m 이내**로 하면 도달시간 차가 약 0.05초 이내가 된다. 반사음이 직접음을 보강하도록 하여 말소리의 명료도를 높이기 위한 계획 기준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극장 계획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시선거리의 기준은 **생리적 한도 15m, 제1차 허용한도 22m, 제2차 허용한도 35m**이다. 생리적 한도는 연기자의 표정과 세밀한 동작을 감상할 수 있는 거리이며, 허용한도는 공연의 성격과 관객 수용을 고려하여 그 범위를 넓힌 것이다. 선지의 12m·25m·32m는 이 기준과 다르다.

② O: 직접음은 음원에서 객석에 곧바로 도달하는 소리이고, 1차 반사음은 벽이나 천장 등에 한 번 반사되어 도달하는 소리이다. 두 소리의 **경로차를 17m 이내**로 계획하면 도달시간 차가 약 0.05초 이내가 되어 반사음이 직접음을 보강하는 데 유리하다. 경로차가 커져 반사음이 지나치게 늦게 도달하면 별개의 소리로 들리는 반향이 발생하여 말소리의 명료도가 떨어질 수 있다.

③ X: 의자의 전후 간격이 90cm 미만이면 양쪽 세로통로 사이 중앙부의 한 줄 좌석 수는 **8석 이내**로 계획하는 것이 좋다. 앞뒤 간격이 좁은 상태에서 좌석을 길게 연결하면 관객이 통로로 빠져나오기 어려우므로 연결 좌석 수를 제한한다. 선지의 10석 이내는 8석 이내로 고친다.

④ X: 프로세니움 아치는 객석에서 무대를 바라보는 개구부의 틀이다. 무대 폭은 이 개구부뿐 아니라 양옆의 배우 출입과 무대장치 대기·전환 공간까지 고려하여 **프로세니움 아치 폭의 2배 이상**으로 계획한다. 선지의 1.5배 이상은 필요한 측면 공간을 확보하는 일반적인 계획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NoteBase

문 13. 도서관 내 서고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서고는 서고면적 1m^2당 150~250권을 수장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② 모듈러 시스템에 따라 계획하며, 위치는 고정하도록 한다.

③ 향후 도서 증가에 따른 확장 고려를 할 필요 없다.

④ 서고의 40%가 찰 경우에는 기존 시설의 확충을 고려해야 한다.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서고의 일반적인 수장능력은 **면적 1m^2당 150~250권**을 기준으로 계획한다. 장서가 계속 증가하므로 현재의 수장량뿐 아니라 장래의 확장과 배치 변경도 고려해야 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서고면적 1m^2당 **150~250권**을 수장하는 것을 일반적인 계획 기준으로 삼는다. 이는 도서를 보관할 서고의 규모를 산정하는 기준이며, 실제 수장능력은 서가의 형식과 배치 등에 따라 달라진다.

② X: 모듈러 시스템에 따라 계획한다는 부분은 맞지만, 위치를 고정한다는 부분이 잘못되었다. 모듈러 계획은 일정한 계획 단위를 바탕으로 공간을 구성하여 **서고의 위치와 배치를 변경하기 쉽도록** 하는 방식이다. 장서량이나 이용 방식이 달라질 때 공간을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③ X: 서고는 **향후 도서 증가에 따른 확장을 고려**하여 계획해야 한다. 현재 장서량에만 맞추면 도서가 늘어날 때 수장공간이 부족해지므로, 처음부터 서가 증설이나 공간 확장이 가능한 여지를 확보한다.

④ X: 일반적인 서고계획에서 시설 확충을 검토하는 시점은 40%가 아니라 **서가가 약 70% 정도 찬 단계**이다. 서가가 완전히 차기 전부터 장서 증가에 대비해야 하며, 새 도서를 꽂고 기존 도서를 재배열할 여유 공간도 필요하다.

NoteBase

문 14. 주거 단지의 밀도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건폐율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이 얼마나 차지하느냐에 대한 비율을 말한다.

② 용적률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 비율을 말한다.

③ 인구밀도는 토지면적을 거주인구로 나눈 것으로 일반적으로 거주밀도를 말한다.

④ 호수밀도는 단위 토지면적에 세대수가 얼마나 있는가에 대한 비율을 말한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인구밀도는 **거주인구를 토지면적으로 나눈 값**이다. ③처럼 토지면적을 거주인구로 나누면 밀도가 아니라 1인당 토지면적이 된다.

선지별 해설

① O: 건폐율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이다. 대지를 건축물이 얼마나 덮고 있는지를 나타내므로, 대지의 수평적인 이용 정도를 파악하는 지표이다.

② O: 용적률은 대지면적에 대한 **각 층 바닥면적 합계의 비율**이다. 건폐율이 건축물이 대지를 덮는 정도를 나타내는 데 비해, 용적률은 여러 층에 걸쳐 확보한 바닥면적을 반영한다. 이때 법정 용적률은 용적률 산정 대상에 포함되는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③ X: 인구밀도는 단위 토지면적에 거주하는 인구수이므로 **거주인구를 토지면적으로 나누어야 한다**. 같은 면적에 더 많은 사람이 살수록 인구밀도는 높아진다. 선지의 나눗셈 순서는 반대이며, 토지면적을 거주인구로 나눈 값은 1인당 토지면적이다.

④ O: 호수밀도는 단위 토지면적에 들어서는 주택 호수 또는 세대수를 나타낸다. 인구밀도가 사람 수를 기준으로 하는 데 비해, 호수밀도는 **주택 호수·세대수**를 토지면적으로 나누어 주거의 밀집 정도를 나타낸다.

NoteBase

문 15. <보기>의 단열설계와 결로의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보기>
ㄱ. 내단열은 외단열에 비해 실온변동이 크다.
ㄴ. 외단열은 내단열에 비해 열교부위의 단열보호처리가 용이하므로 열교부위를 통한 열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
ㄷ. 외단열은 내단열에 비해 구조체 내부의 온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내부결로 발생가능성이 낮다.
ㄹ. 결로란 공기 중에 포함된 수증기가 응축되면서 구조체의 표면이 축축해지는 현상이다.
ㅁ. 구조체의 표면결로는 단열시공을 통해 구조체 내표면 온도를 노점온도 이하로 유지시킬 경우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ㄴ, ㄹ, ㅁ
④ ㄷ, ㄹ, ㅁ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외단열은 겨울철 구조체의 온도를 **상대적으로 높게 유지**하여 내부결로 위험을 줄인다. 표면결로를 방지하려면 구조체 내표면 온도를 **노점온도보다 높게** 유지해야 한다.

NoteBase

보기별 해설

ㄱ. O: 내단열은 구조체의 실내 쪽에 단열재를 설치하므로 구조체가 실내 공기와 열을 주고받기 어렵다. 반면 외단열은 구조체가 단열층 안쪽에 있어 열을 저장했다가 내놓는 **축열작용으로 실온변동을 완화**한다. 따라서 다른 조건이 같다면 내단열의 실온변동이 외단열보다 크다.

ㄴ. O: 열교는 주변보다 열이 쉽게 전달되는 부분으로, 단열층이 끊기는 벽과 바닥의 접합부 등에서 생기기 쉽다. 외단열은 구조체 바깥을 **연속된 단열층으로 감싸기 쉬워** 이러한 열교부위를 통한 열손실을 줄이는 데 유리하다.

ㄷ. X: 외단열로 내부결로 위험이 낮아지는 것은 겨울철 구조체 내부의 온도가 상대적으로 낮아서가 아니라 **높게 유지되기 때문**이다. 내부결로는 벽체 등의 내부에서 수증기가 응축되는 현상이다. 외단열은 구조체를 단열층의 실내 쪽에 두어 차가워지는 것을 억제하므로 구조체 내부가 결로 발생 온도까지 내려갈 위험을 줄인다.

ㄹ. O: 공기 중의 수증기가 차가운 구조체 표면에 접촉하여 냉각되면 액체 상태의 물로 응축되어 표면이 축축해질 수 있다. 이는 **표면결로**에 해당하며, 수증기가 물로 바뀌는 현상이 결로이다.

ㅁ. X: 노점온도는 공기가 냉각될 때 수증기의 응축이 시작되는 온도이다. 구조체 내표면 온도가 노점온도 이하로 내려가면 표면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단열시공을 통해 내표면 온도를 **노점온도보다 높게 유지**해야 한다. 보기의 '노점온도 이하'는 결로 방지 조건을 거꾸로 설명한 것이다.

옳은 보기는 ㄱ · ㄴ · ㄹ이며, 이 조합은 ②에 해당한다.

NoteBase

문 16. 「건축법 시행령」상 건축물 대수선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증축·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①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2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② 기둥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③ 보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④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정답 1번

①

내력벽의 수선·변경이 대수선에 해당하는 면적 기준은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이다. 선지의 20제곱미터 이상은 기준과 다르다. 내력벽의 증설·해체에는 이 면적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대수선의 범위)
법 제2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증축 · 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2.18, 2014.11.28>
1.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②

기둥은 **증설·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변경하면** 대수선에 해당한다. 세 개 이상이라는 수량 기준은 수선·변경에 적용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대수선의 범위)
법 제2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증축 · 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2.18, 2014.11.28>
2. 기둥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③

보는 **증설·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변경하면** 대수선에 해당한다. 세 개 이상이라는 수량 기준은 수선·변경에 적용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대수선의 범위)
법 제2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증축 · 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2.18, 2014.11.28>
3. 보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NoteBase

④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벽은 **증설·해체하거나 수선·변경하면 규모와 관계없이** 대수선에 해당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대수선의 범위)
법 제2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증축 · 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2.18, 2014.11.28>
5.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NoteBase

문 17. 「특별건축구역 운영 가이드라인」상 특별건축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경제자유구역, 공공주택지구, 도시개발구역, 접도구역 등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특별건축구역에서는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 부설 주차장의 설치, 공원의 설치 규정에 대해 개별 건축물마다가 아닌 특별건축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 종교시설의 경우 연면적 500m^2 이상인 건축물에 한해서 특별건축구역 내 특례사항을 적용할 수 있다.

④ 특별건축구역 내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물의 피난시설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정답 2번

①

접도구역은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 지정 가능한 구역에 접도구역을 포함한 부분이 잘못되었다.

건축법 제69조(특별건축구역의 지정)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 구역 등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
3. 「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

②

미술작품·부설주차장·공원의 설치 규정은 **개별 건축물마다 적용하지 않고 특별건축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다.**

건축법 제74조(통합적용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특별건축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령의 규정에 대하여는 개별 건축물마다 적용하지 아니하고 특별건축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1.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2.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의 설치

③

종교시설에는 특별건축구역의 특례 적용을 위한 **별도의 최소 연면적 제한이 없다.** 연면적 500m^2 이상으로 한정하지 않는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3 제3호
https://d2u7om5rih5x7z.cloudfront.net/ox-images/drive-repair/1c6fnfe3HdE6SVTvBjJxu4yPCsJrdGnN1.webp

NoteBase

④

피난시설 규정은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부로 완화할 수 있는 대상**이다. 요구되는 기준·성능을 **다른 방법으로 대신할 수 있다고 지방건축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만** 전부 또는 일부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건축법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도, 계단, 출입구, 그 밖의 피난시설과 저수조(貯水槽), 대지 안의 피난과 소화에 필요한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4.17>

건축법 제73조(관계 법령의 적용 특례)
② 특별건축구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이 제49조, 제50조,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 제62조 및 제64조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규정에서 요구하는 기준 또는 성능 등을 다른 방법으로 대신할 수 있는 것으로 지방건축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만 해당 규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NoteBase

문 18.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휠체어사용자가 다른 휠체어 또는 유모차 등과 교행할 수 있도록 50미터마다 1.5미터×1.5미터 이상의 교행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접근로의 기울기는 지형상 곤란한 경우에는 12분의 1까지 완화할 수 있다.

③ 접근로와 차도의 경계부분의 연석 높이는 6센티미터 이상 15센티미터 이하로 할 수 있으며, 색상과 질감은 접근로의 바닥재와 다르게 설치할 수 있다.

④ 가로수는 지면에서 1.8미터까지 가지치기를 하여야 한다.

정답 4번

①

휠체어사용자가 다른 휠체어 또는 유모차 등과 교행하도록 **50미터마다 가로·세로 각각 1.5미터 이상의 교행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가목(2)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제2조제1항관련)
2) 휠체어사용자가 다른 휠체어 또는 유모차 등과 교행할 수 있도록 50미 터마다 1.5미터×1.5미터 이상의 교행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

②

접근로의 기울기는 원칙적으로 **18분의 1 이하**로 하되, **지형상 곤란한 경우에는 12분의 1까지 완화**할 수 있다.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나목(1)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제2조제1항관련)
1) 접근로의 기울기는 18분의 1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지형상 곤란한 경우에는 12분의 1까지 완화할 수 있다. (

NoteBase

③

연석의 높이는 **6센티미터 이상 15센티미터 이하**로 할 수 있으며, **색상과 질감은 접근로의 바닥재와 다르게 설치할 수 있다**.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다목(2)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제2조제1항관련)
2) 연석의 높이는 6센티미터 이상 15센티미터 이하로 할 수 있으며, 색상 과 질감은 접근로의 바닥재와 다르게 설치할 수 있다.

④

가로수는 **지면에서 2.1미터까지 가지치기**를 하여야 한다. 선지의 1.8미터는 기준보다 낮다.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마목(2)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제2조제1항관련)
2) 가로수는 지면에서 2.1미터까지 가지치기를 하여야 한다.

NoteBase

문 19.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아파트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아파트는 장애인등이 그 이용에 편리한 구조로 계단을 설치하거나 장애인용 승강기를 1대 또는 1곳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② 아파트의 주출입구와 통로에 높이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턱낮추기를 하거나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아파트의 주출입구는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유효폭·형태 및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④ 아파트의 주출입구와 단지내 도로 또는 보도에는 점자블록을 설치하여야 한다.

정답 4번

①

아파트는 층간 이동을 위해 **장애인등의 이용에 편리한 구조의 계단을 설치하거나** 장애인용 승강기·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1대 또는 1곳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4호가목(6)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제4조관련)
4. 공동주택
가. 일반 사항

https://d2u7om5rih5x7z.cloudfront.net/ox-images/drive-repair/1yO-B6HNjeSZMmIyyqMXVw19KCEHbYUir.webp

NoteBase

②

주출입구와 통로에 높이차이가 있으면 **턱낮추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로 높이차이를 제거**하여야 한다.
다만, 주출입구의 높이차이 제거가 구조적으로 곤란하거나 부출입구가 장애인등의 이용에 더 편리하고 안전하면 부출입구의 높이차이를 대신 없앨 수 있다.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4호가목(3)(가)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제4조관련)
4. 공동주택
가. 일반 사항

https://d2u7om5rih5x7z.cloudfront.net/ox-images/drive-repair/1OFg7AbwAyQB5LJ_QQX1zywuPgNlo5kCB.webp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4호가목(3)(나)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제4조관련)
4. 공동주택
가. 일반 사항

https://d2u7om5rih5x7z.cloudfront.net/ox-images/drive-repair/1v0RiTsT9VFGNCO90cMHCykEyxyvTeCri.webp

③

주출입구는 문이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장애인등이 실제로 통과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아파트에서도 유효폭·문 형태·부착물이 출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설치해야 한다.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4호가목(4)(가)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제4조관련)
4. 공동주택
가. 일반 사항

https://d2u7om5rih5x7z.cloudfront.net/ox-images/drive-repair/1gIkodF2cSTnH43db2QKmAlKURx0jJ9ZV.webp

NoteBase

④

아파트의 점자블록은 **의무시설이 아니라 권장시설**이므로 주출입구와 단지 내 도로 또는 보도에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4호나목
4. 공동주택
나.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https://d2u7om5rih5x7z.cloudfront.net/ox-images/drive-repair/1TozAz3x21DBPDeqEIUgFP3c2b4bqwyxi.webp

NoteBase

문 20. 「건축법 시행령」 상 <보기>의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기준 중 ㉠, ㉡, ㉢에 해당하는 내용을 옳게 짝지은 것은?

<보기>
제86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正北) 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1. 높이 (㉠)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미터 이상
2. 높이 (㉠)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 이상

① ㉠: 9, ㉡: 1, ㉢: 2분의 1

② ㉠: 9, ㉡: 1.5, ㉢: 3분의 1

③ ㉠: 10, ㉡: 1, ㉢: 3분의 1

④ ㉠: 10, ㉡: 1.5, ㉢: 2분의 1

정답 4번

공통 해설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의 각 부분은 정북 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높이 10미터 이하인 부분은 1.5미터 이상, 10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은 해당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正北) 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개정 2015.7.6, 2023.9.12>
1. 높이 10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2. 높이 10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NoteBase